

## 제7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0. 12. 16.(목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

양문석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결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의거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.

나. 의결사항

1) 「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」(고시)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75(서)-307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거, '09년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 - '09년도 경쟁상황 평가결과, 전년도와 같이 시내전화는 (주)KT가, 이동전화는 SK텔레콤(주)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,
  -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(사업법 제28조제2항)는 현행대로 유지하고,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서만 '0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

< 현 행 >

역무명	전년도 매출액 기준	사업자명
시내전화	19,600억원 이상	(주)케이티
이동전화	90,600억원 이상	SK텔레콤(주)

< 개 정 >

역무명	전년도 매출액 기준	사업자명
시내전화	<b>17,200억원이상</b>	(주)케이티
이동전화	<b>94,900억원이상</b>	SK텔레콤(주)

2) 「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·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」(고시)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75(서)-308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의거, '09년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호접속 등 협정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- 주요 내용
  - '09년도 경쟁상황 평가결과, 전년도와 같이 시내전화는 (주)KT가, 이동전화는 SK텔레콤(주)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,
  - 상호접속·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 인가대상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(사업법 제39조제3항)는 현행대로 유지하고,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서만 '09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

< 현 행 >

역무명	전년도 매출액 기준	사업자명
시내전화	19,600억원 이상	(주)케이티
이동전화	90,600억원 이상	SK텔레콤(주)

< 개 정 >

역무명	전년도 매출액 기준	사업자명
시내전화	<b>17,200억원이상</b>	(주)케이티
이동전화	<b>94,900억원이상</b>	SK텔레콤(주)

**3) 「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」(고시)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75(서)-309)**

- 제57차 위원회('10. 9. 17) 보고 후,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「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」(고시)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국토해양부 및 한전의 의견을 반영하여 '의무제공 대상 설비 제공현황 등의 신고기간'을 '분기별'에서 '반기별'로 완화 [나머지 사항은 제57차 위원회('10. 9. 17) 보고내용과 동일]

○ 주요 내용

- ① 통신사업자가 아닌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특수성과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기관의 제공대상 설비의 범위, 절차 및 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
- ② 설비제공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(KTOA)로 지정하고, 설비 제공 관련 통계관리 및 전산화 업무 등을 하도록 함
- ③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설비제공 조항들을 알기 쉽도록 재배치